

원데이 언법

2017년 법원 9급

정답표(1색영)

②③④②② ②②④①②

④②①③① ③③②④③ ②④④②③

01

② [cf]서울대학교, 국립대학(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무대학, 한국방송공사, 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전력공사 → 기본권 주체 可

02

③ ■ '정당한 보상' : [현재판례] "이주대책은 포함X"(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일 뿐)

03

④ '성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남자만의 병역의무' 위헌심사 사건에서 현재는 엄격심사X·자의금지원칙 심사O(합헌 - 현재 2010.11.25. 2006헌마328) - 제대군인가산전 제도와는 구별

04

② ■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사건 : [현재판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될 수도 있다 ... But,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권 주체성(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가의 보호의무는 긍정(O))." → 자기관련성 여부 : 산부인과 의사·법학자·교수 등의 직업인들(X), '잔여배아의 연구규정'에 관한 배아생성자들(X), '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지규정'에 대한 배아생성자들(O) (합헌 - 현재 2010.05.27. 2005헌마346) [cf]태아 :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의 주체(O), 신체의 자유의 주체(X) ★

05

②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판례(多) - 확실히 암기!!! ★ 이외 모두 합헌

06

② ■ [현재판례]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상 금지되는 집회의 허가제도 및 검열제도 판단에도 적용됨)

07

② ■ 명확성의 원칙 : [현재판례]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

08

④ ■ 내용 : [현재판례] "㉠신앙의 자유(내재적 무한계설) - 무신앙의 자유도 포함,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전파·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개종을 권고하는 자유 및 '타 종교에 대한 비판' 포함('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등이 있다. But,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현재 2008.06.26. 2007헌마1366) ★

09

①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고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0

② 공무담임권이 침해된 판례(多) 이외 모두 합헌

11

④ 동의 체포 : 과출·과반(재적과반수의 찬성X)

12

②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3

①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14

③ ■ 사면규정의 준용 :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도 적용됨(사면법 §4) [cf]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사면을 할 수 없다(X)

15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6

③ ■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헌법] ①법률의 위헌결정. ②탄핵결정. ③정당해산결정. ④헌법소원에서의 인용결정 → 정족수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함(권한쟁의심판은 불포함! → 7인 이상 출석 + 종국심리에 관여한 과반수 찬성) / [헌재법]에서 추가 → ⑤헌법재판소의 판례변경(→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더라도 위헌이 아님) / 【주의】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이라도 ①법률의 위헌결정(헌법)과 ②판례변경사안(헌재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17

③ 헌재에 제심 거부 : 일반적 허용설, 개별적 허용설 / 헌재는 개별적 허용설 → "①'판단유탈'(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18

② 청구인들의 재정신청에 대해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이므로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공소제기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될 법률이 아니다(헌재 2015.01.29. 2012헌바434)

## 19

④ [cf]“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관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은 준용될 여지가 없고, 민소법만 준용되며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20

③ 법관의 정년 : 대법원장:70세, 대법관:70세, 판사:65세

## 21

②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재법 §53)

## 22

④ 재판의 전제성 X : 법원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계속되어 있는 경우(원칙)

## 23

④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68①)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68②항) **병합청구** 可(헌재 2010.03.25. 2007헌마933)  
【주의】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각하 - 헌재 2013.09.17. 2013헌마545) ★

## 24

② ■ 헌법의 개정절차 : ㉠'제안' (대통령(국무회의 심의) or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 ㉡대통령의 '공고'(20일 이상) → ㉢국회의결'(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기간 경과 후),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기명'투표(□헌법상 등장 1번-원칙은 무기명투표), 공고제도에 반하므로 수정의결 不可) → ㉣'국민투표'로 확정(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 ㉤'공포'(즉시 공포) → ㉥발효(발효시기는 명문규정無 - '공포시설'과 '20일경과설'의 대립. 현행헌법은 부칙에서 발효시기를 별도 규정(부칙§1))

## 25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